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의문사 유족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제출일: 2002년 8월 12일

■ 연구진 ■

책임연구원 : 김보덕 (서울대 인류학과 조교, 인류학 석사)

공동연구원 : 심주형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수료)

최윤정 ('제주 4.3 진상규명·명예회복위원회' 간사,

성공회대 시민사회단체학과 석사과정)

이수연 (성공회대 시민사회단체학과 석사과정)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의문사 유족의 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제출일: 2002년 8월 12일

■ 연구진 ■

책임연구원 : 김보덕 (서울대 인류학과 조교, 인류학 석사)

공동연구원 : 심주형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과정 수료)

최윤정 ('제주 4.3 진상규명·명예회복위원회' 간사,

성공회대 시민사회단체학과 석사과정)

이수연 (성공회대 시민사회단체학과 석사과정)

-목 차-

I. 서론	1
1. 조사의 목적	1
2. ‘피해자’ 그리고 ‘피해’의 재개념화	2
3. 접근의 방법 및 조건	8
II. 본론 – 피해의 유형	12
1. 변사사건에서 의문사 사건으로의 전화	12
1) 사건은폐 · 축소 시도	
(1) 사건 ‘발생자체’의 은폐 시도	
(2) 시신 · 사건 현장 · 증거물에 대한 훼손과 조작 및 접근금지	
(3) 유가족에 대한 협박, 회유	
(4) 사건증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	
2) 부검을 둘러싼 문제들	
(1) 강제부검	
(2) 부검강요	
(3) 부검동의서 조작	
(4) 부검 회피	
3) 장례를 둘러싼 피해	
(1) 장례방식의 일방적 결정	
(2) 장례 독촉	

4) 감시와 통제

- (1) 장례 감시
- (2) 영안실 감시
- (3) 일상생활 감시

2. 의문사 사건으로부터의 피해 33

1) 국가와 사회, 이웃에 의한 낙인과 고립

- (1) 낙인찍기 : '자살'
- (2) 낙인찍기 : '빨갱이'

① 생계활동의 불이익

가. 해고압력

나. 취업에서의 불이익

② 공동체에서의 고립

(3) '빨갱이'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① 침묵을 선택함

② 미래를 수정함

2) 경제적 피해

(1) 주요 가계부양자, 기대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

(2) 생업 유지 포기

(3) 정당한 대가 받지 못함

3) 육체적·정신적 피해

(1) 육체적 피해

(2) 정신적 피해

① 죄책감

② 상실감과 박탈감 및 절망감

③ 불안과 공포

④ 악몽으로 인한 스트레스

(3) 병을 얻어 사망까지 이룸

4) 가족, 친척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피해

(1) 가족의 재구성

(2) 친척관계의 단절

① 사건 처리과정에서 관계기관에 협조한 친척과 단절

② 친척과의 소원

(3) 가정불화, 해체

(4) 의도적 망각

3. 진상규명 과정에서의 피해 69

1) 관계기관에 의한 피해-i: 개별적인 진상규명 노력 과정에서

(1) 협박, 회유

(2) 감시, 미행, 동향파악

(3) 비협조와 무관심

2) 관계기관에 의한 피해-ii: 집단적인 진상규명 노력 과정에서

(1) 구타

(2) 연행, 구류, 구속

(3) 진상규명 노력이 왜곡인식됨

3) 경제적 피해

(1) 생계 유지불가능

(2) 사기

4) 육체적·정신적 피해

(1) 육체적 피해

(2) 정신적 피해

① 불안, 공포

② 자책감

5) 가정교육의 문제

6) 가해자의 '불처벌'로 나타나는 고통

7) 국가에 대한 불신

4. 유가족들의 바램 95

1) 진상규명

(1) 철저한' 진상규명

(2) 조사의 철저한 공개

(3) 가해자, 목격자의 조사협조, 양심선언

(4) 대국민홍보를 통한 올바른 자리매김

2) 명예회복 및 의문사 사건의 역사화

3) 재발방지 노력

4) 유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5. 소결 100

III. 결론 102

□ 참고문헌

I. 서론

1. 조사연구의 목적

본 조사연구는 가족구성원의 죽음에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접수 한 유족들을 대상으로 하며, 그들의 피해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의문사 유족들을 단순하게 사건의 '진정인'으로 이해하는 것에서 벗어나, '희생자'로서 간주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기준으로 잡혀가고 있다. UN에서는 이미 '범죄희생자와 권리남용에 대한 정의의 기본원칙 선언'(1985년 11월 29일의 총회의결안 40/34)을 통해 희생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특히, '선언'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유족의 피해에 대한 우리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희생자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 즉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상처, 감정적 고통, 경제적 손실이나 기본권의 상당한 침해를 포함하여 손해를 당한 사람 ... 희생자는 용어는 또한 직접적인 희생자의 직계가족이나 부양가족과, 고통 중에 있는 희생자를 돋거나 희생을 막기 위해 개입함에 있어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포함한다¹⁾.

그러므로 유족들은 사건의 단순 관련자라기보다는 피해자(victims)로서 의문사한 직접적인 희생자와 마찬가지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들은 의문사 사건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담지하고 있는 주체들일 뿐만 아니라 증언자들이고, 많게는 수십

1 Theo van Boven, "Compensation for victims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 : draft resolution", Geneva: UN, 1988에서 재인용.

년 동안 사건의 해결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진행해 온 사람들이다. 더 나아가 그들은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하고 의문사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을 촉구하며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등 우리사회의 인권신장에도 적극 참여해 왔다.

그들의 경험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역사적 증거가 되고, 그들의 기억은 개인적인 피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으로 확장되어 국가 기구의 공권력 사용에 광범위한 불신을 낳았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사용으로 초래된 의문사사건은 이처럼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켜 온 것이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활동이 의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것을 통해 권위주의적인 과거사를 청산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명예회복과 국가차원의 적절한 보·배상 조치를 강구하고, 화해와 기념사업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때, 피해자로서 유족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그 같은 활동의 중요한 기초자료로써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보고서의 목적을 충족시키고자, 유족의 피해를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그것에 입각하여 다양한 피해유형들을 조사·분석한다.

2. ‘피해자’ 그리고 ‘피해’의 재개념화

의문사 유족을 ‘피해자’라고 규정할 때 그들의 ‘피해’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개념 규정의 문제와 만나게 된다.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해(injury), 정서적인 고통(suffering), 경제적 손실 혹은 인권의 실질적인 손상을 포함하는 피해로 인해,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가 의문사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라고 말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공권력의 남용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죽음의 당사자만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들의 친인척, 부양가족, 연인 그리고 공동체들

까지 의미한다(Gannage,1988).

이러한 ‘피해자’ 정의가 우리에게 ‘유족의’ 피해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정의는 피해의 범위를 폭넓게 보고 다양한 피해자들의 존재 가능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유족의 피해를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의문사 사건이 그 자체로서 보여주는 특성과 한국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의문사 사건은 대부분 국가기관과의 관계 하에서, 다시 말해 군복무 중이거나 연행 및 수감 중 혹은 그에 준하는 국가기관의 조사 및 수배 혹은 감시 하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이다. 이렇듯 국가기관이 죽음에 관계되었다는 의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은 대체로 유족과 사회가 남독할 만한 수준의 실체 규명 절차를 밟지 않았고 설명해주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가족 구성원의 변사사건은 가장, 자녀 혹은 형제자매를 잃은 유족들에게 예상치 못한 재난(disaster)으로서 인식된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 재난의 소식에 망연자실해하며 슬픔에 빠진 유족들은 일차적으로 국가기관이 보여준 책임 방기에 커다란 불신과 분노를 가지게 되었다.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절차를 결정하고 의례를 치루어야 하는 유족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경험했던 것들은 변사사건이 ‘의문사’ 사건으로 전화되는데 결정적이었다.

장례는 가족과 친척관계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통과의례(*les rites de passage*)이다. 그 의례에 참여하는 상주로서의 유족들은 살아있는 자로서 분리의례(rites of separation)를 통해서 전이기(transition)로 들어가며, 사회에의 재통합의례(rites of incorporation ; 탈상의례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를 통해 그곳에서 나오게되는 과정을 거친다(van Gennep, 1985: 197-219)²⁾. 하지만 공권력에 의한 일방적

2) van Gennep(1985)의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살아 있는자는 가족 구성원의 사망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일상으로부터의 분리를 통해 장례의례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그 의례의 전 과정에서 죽은자와 살아 있는자가 함께 하는 다시말해, 산자의 세계와 망자의 세계, 두 세계가 공존하는 전이(轉移)적인 상황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은 일반적으로 탈상을 통해 다시 두 세계가 분리되고 살아 있는자는 사회로 재통합되

인 사인 발표와 장례의 진행은 장례를 통한 사회에의 재통합을 가로막았다. 그 같은 수사와 장례는 사망한 가족 구성원의 죽음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고 삶과 분리시켜, 한편에선 개인과 가족의 지위와 역할을 재편성해야 할 의례의 과정을 왜곡하고 망자의 죽음을 그대로 살아있는 자의 삶에 전이되어 있는 채로 남겨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련 국가기관이 의문사 피해자의 사인을 ‘단순 사고사’ 혹은 ‘자살’로 판정·통보한 것은 권위주의적 공권력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과 겹쳐져, 충격을 분노로까지 전화시키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사건정황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사고사로 사인을 통보한 경우, 국가기관은 대부분 최소한의 조사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태도와 사건을 은폐하고 조속히 처리하려는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죽음은 민주화운동 전력과 결부되어 국가권력에 저항한 자의 죽음으로서 그것에 관계된 절대적인 국가권력에 의한 죽음으로 유포되어졌다. 이러한 과정은 유족들의 경험과 사건에 대한 의혹 그리고 사회구성원 내부에 널리 퍼져 있는 국가권력에 대한 불신감이 상호작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절대적 국가권력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불신이 대중과 공동체 내부에서 성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권력에 저항하는 일체의 행위를 죽음에 이르는 위험스러운 활동으로 규정하며,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들 또한 자신과 공동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이들로 ‘낙인’(Goffman, 1968)을 찍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변사 사건의 비일상성에 더하여 이해되지 않는 개인적 사고사로 정리된 사건은 결국 피해자의 특수성-민주화 운동 경력 등-에 초점을 맞추어 죽음을 설명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이르게 된다. 즉 의문사 피해자는 설령 억울한 죽음일지언정 그러한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어있는 활동을 한

는 과정을 겪게 된다. 그러나, 만약 의례의 기능적 축면을 제약하고 왜곡하는 의례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개입하는 경우에 의례의 기능적 안정성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탈상이라는 형식적인 장례의례의 종료 이후에도 전이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의문사 사건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으로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로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규정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빨갱이 낙인’이 결합되어 심지어 피해자의 죽음을 당연한 귀결로까지 이해하는 경향마저 낳았다. 이처럼 의문사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상이한 이해가 공동체 내부에 일어나게 됨으로써, 유족과 공동체 혹은 집단 상호간에 경합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은 곧 공동체 내부의 심각한 문제로 비화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인이 자살로 규정된 의문사 사건의 사례들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 유족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80년대 발생한 군내 의문사 사건들은 대부분 자살로 유족에 통보되어졌다. 자살의 사인으로 언급되어진 이른바 ‘비관자살’은 의문사 피해자 개인과 유족의 명예에 결정적인 훼손을 가져왔다.

의문사 피해자의 경우에 ‘자살’은 그 스스로가 ‘비정상적’인 개인으로서 인정받게 되고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그의 삶에 있어서도 심각한 불명예를 놓는 것이었다. 암울한 권위주의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생명을 잃었다. 그 중 국가기관과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타살’로 인정된 죽음들은 유족들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내에서는 ‘명예로운 죽음’으로서 인정받는 사례들도 있다. 하지만 ‘자살’의 경우에는 나약한 의지, 신념에 대한 회의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불가피하게 더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동료들과 공동체 내부에서 불명예스러운 죽음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을 놓게 되었다.

자살의 사인이 가정문제 비관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의문사 유가족을 이른바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이었기에 살아있는 유족들이 감내해야 하는 명예손상과 충격은 더더욱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가족’을 언급하는 경우에 ‘정상적’이라 함은 한국사회에서 지배적인 혼혈모니를 획득한 가족의 패턴, 즉 형태상으로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되어 주거를 함께 하고 자녀재생 및 공동가계를 이루며(이효재, 1990: 3-34), 내용상으로는 가부장적 전통에 서구의 사적 영역 이데올로기가 겹쳐져 ‘현모

양처'로서 여성의 성 역할이 부각되고 가족 부양이 개별가족의 도덕적 의무로 인식되는(장경섭, 1996: 220) 가족을 뜻한다. 이러한 '정상적'인 가족의 상은 그 자체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전제됨으로써 그러한 형태를 갖지 못한 가정에 대해 '결손가정', '가족붕괴'라는 낙인을 씌우게 된다(조문영, 2001: 148).

의문사 사건의 피해자들의 절대다수가 성인남자이고, 그것도 가장이거나 장차 가족부양의 의무와 역할 수행이 기대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사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일단 가족의 유지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죽음이 '가정을 비관'한 자살이라고 국가기관에 의해 공표되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한 가족의 공동체 내 지위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국가기관이 의문사 유가족을 '비정상적' 가족으로 공인한 결과를 놓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의 공공성이 그 자체로서 의심받는 상황과 '비정상적' 가족이라는 공동체 내부의 낙인은 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투쟁과 그것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압박과 배제로 결과하게 되는 사례들을 찾아 볼 수 있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상적' 가족으로 낙인찍히는 과정 속에서 유족들이 의문사자의 죽음에 간접적인 가해자로서 어떤 방식으로든 규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학생 운동에 관계하는 아들의 입대를 권유했던 부모들의 경우에는 그 자책감의 깊이와 심각성이 극에 달해 심지어 자살하는 경우까지도 있었다. 즉 의문사 사건이 그 성격상 사회적인 죽음이며 국가 기관의 도덕적 책임을 간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국가 기관이 사건 자체를 개인과 가족 내부에 제한하여 규정함으로써 가해의 주체와 책임성 역시 개별화된 가족에 부과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로서의 유족들은 심지어 국가 기관이 마땅히 담당해야 할 책임까지 떠넘겨 받고 사건의 관련자로서 때로는 직접적인 원인제공자로까지 내몰리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던 것이다. 한국 사회의 강력한 가부장주의는 이 상황을 결코 가족 내부의 문제로 국한시키지 않았으며, 국가권력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은 사건에 대한 의혹과 더불어 저항을 필연적으로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의문사 유족은 단순히 자식을 잃고 가장을 잃은 슬픔과 회한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에 대한 가족 및 사회적인 책임까지 떠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의문사 유족들을 피해자로서 규정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피해에 접근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손실과 인권의 침해로서 정의되는 피해 개념은 하나의 일반적 관점을 제공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유족들이 피해자로서 등장하는 과정에서처럼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주어진 피해자의 지위 속에서 이차적으로 부과되고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피해 사례들이 존재한다. 특히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노력들 속에서 발생한 피해들은 의문사자보다는 유족들의 활동과 좀더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유족의 피해는 일반적인 개념을 대입하여 계량화하고 유형화하기 어렵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사법적 판단만으로 의문사 사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의 특징이다. 게다가 대개 사건 발생 후 1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 피해를 정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유족들의 피해에 대한 보·배상의 조치들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피해자의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가는 원칙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의문사 사건과 관련한 모든 공식적 관점은 철저하게 가해자의 관점에 근거하고 있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의문사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 재조사나 명예회복 조치 등이 없었다는 점은 명확하게 그간의 의문사 사건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88년 UN의 '중대한 인권침해의 희생자에 대한 배상'이라는 문서에는 이러한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그 동안 자신들의 고통이 주변화·축소됨을 경험하고 국가의 책임 방기와 대면하면서 큰 어려움과 고통을 받아왔다. 또한 그들의 피해는 오랜 무시와 침묵 속에서 최근에야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법률적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피해와 더불어 그렇지 못한 피해들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고통’과 ‘장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유가족의 피해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사실상 의문사자의 죽음은 사회의 일반적 죽음과 다르게 이해되었기 때문에, 유족들의 삶에는 단순한 슬픔 외에도 지속적 ‘고통’이 부가되어 왔다. 그리고 의문사의 발생 맥락을 고려할 때 그 죽음은 ‘사회적 죽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즉 ‘고통’도 개인적 의미와 더불어 ‘사회적 고통’(social suffering)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갖게 되었다. 일반적인 경우에도 피해는 고통의 성격과 의미 그리고 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주장되고 이해될 수 있다. 피해 개념에 ‘고통’을 포함시켜 이해한다면 피해자의 적극적 해석과 의미 부여를 그 배경과 더불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해결을 피해자 관점에서 시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더더욱 유용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족들을 피해자로서 이해하고, 그들이 말하는 고통과 장애에 대한 호소에 관심을 갖는 것이, 그동안 책임을 방기하였던 국가기관의 자세로서 그리고 과거사 청산의 합리적인 태도로서 요구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3. 접근의 방법 및 조건

이처럼 새로이 정의된 피해 개념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은 두 가지 서술 전략을 택했다.

먼저 각 유족의 피해를 사건과의 직접적 관련성 속에서 서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고통과 피해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변사사건이 의문사 사건화 되는 과정과 의문사라는 사건 자체로부터 얻게 되는 피해로 구분·유형화함으로써 의문사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피해자로 등장하게 되는 유족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유형화는 유족의 피해를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들에 대한

적절한 보·배상 안을 도출해내고 의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에는 진상 규명과정에서의 피해를 서술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적극적 피해자로 규정된 유족들의 개인적 혹은 집단적 문제해결 노력 속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유형화이다. 이 유형화는 유족들을 단순한 사건 관련자 혹은 그 수동적 피해자로서 접근하는 관점에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고려이다. 특히 이 부분은 국가의 역사적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적 책임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의문사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결국 사회적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큰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다시금 환기하는 것이라 하겠다.

본 조사는 제한된 조사 일정과 조건을 고려하여 유족들 가운데 부득이 표본을 추출할 수밖에 없었다.

일차적으로 유가족이 진정인이 아닌 사건, 기각 결정된 사건은 제외하였다. 남은 사건들은 다시 연구자들에 의해 사건의 진정기관과 사건 발생 시점을 중심으로 분류되었다. 사건의 진정기관에 따른 분류는 사건의 성격을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노력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고려하였으며, 사건 발생시점을 분류기준으로 삼은 것은 70년대 사건 그리고 80년대 초·중반의 사건, 그리고 87년 이후의 사건들이 각각 다른 사회·정치적 배경 하에 있었다는 사실과 특히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 결성과 참여 등 유가족들의 조건 변화에 주목한 것이었다.

본 조사는 유가족의 피해조사에 초점이 맞추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사건 진정인이 유가협의 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진상규명 활동을 진행해 왔는지의 유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진정인을 기준으로 유가협 가입 유무에 따라 재차 사건들을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사건들은 다시 사건과 관련된 배경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인의 상태가 구술 증언 가능한지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작업을 거쳤다.

표본 선정을 통한 조사는 항상 그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본 조사 또한

제한된 시간과 조사인력 그리고 현실적 문제들로 인하여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가능한 한 다양한 사례들을 표본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진정사건들의 과반수에 이르는 유가협 회원들의 진정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유가협 의문사지회 간부들과 별도의 모임
을 갖고 그간의 집단적인 진상규명 노력과 그에 따른 피해상황에 대해 별도의 구술
을 청취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보완노력을 하였다.

조사기간 동안 총 27건에 대한 구술·증언녹취를 2002년 5월 4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진행하였으며, 진행 현황은 표1과 같다.

조사는 자택을 방문하거나, 혹은 외부에서 직접 만나 구술·증언 녹취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으며, 불가피한 경우 이메일을 통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일부 구술자
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고, 생업 등의 문제로 시간을 좀처럼 안정적으로 낼 수 없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었다.

구술의 채록은 사건 전후로부터 현재까지 의문사 유가족으로서 겪었던 고통과 피
해에 중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사건의 발생시기가 오래된 경우, 그리고 구술자가
고령인 경우 기억을 정확히 되살리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구술내용
을 토대로 연구자가 재정리하는 방식을 불가피하게 취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오랜
시간 진상 규명 노력을 진행하면서 스스로의 고통과 피해에 무감각해진 경우도 있었
으며, 반대로 침묵과 체념을 내재화한 사례도 있었다. 위원회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
가 진행중인 관계로 사건 중심적인 구술에 집중하려는 경향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
다.

본래 구술 생애사 방법은 유가족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그 사회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사례의 특수성과 일반적 측면들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는 데 그 유
용성이 기대되는 방법이지만, 전술한 문제들로 인하여 일정한 한계를 노출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은 신문과 당시에 나온 팜플렛, 유인물 등의 비공식적
자료 등을 이용하여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

사건 발생 시기	피진정기관	진정 번호	피해자	구술 증언자	피해자와 관계	유가협회원 유무	조사자	비고
1971	불특정	9	김창수	김용문	자	x	A	
1973	중앙정보부	7	최종길	최광준	자	o	B	E-mail
1975	직권조사	84	장석구	고혜경	미망인	△	B	
1978	불특정	28	정법영	정진동	부	o	B	
1981	직권조사	83	이재문	김재원	미망인	△	A	
1983	국방부, 육본, 기무사	5	김두황	김두순 김두원	큰형 둘째형	o	B	E-mail
1983	보안사령부	39	이윤성	박정관	매형	o	B	
1983	국방부, 기무사, 육본	49	한영현	한강현	큰형	o	A	
1983	국방부 기무사	53	한희철	한상훈 김인연	부모	o	A	
1984	국방부, 육군	32	허원근	허영춘	부	o	A, B	
1985	치안본부, 안기부	24	우종원	이계남	모	o	A	
1985	보안대, 안기부, 치안본부	25	김성수	전영희	모	o	B	
1986	경찰	3	신호수	신정학	부	o	A	
1986	경찰	29	김상원	김상모	남동생	o	A	
1987	경찰	6	정경식	김을선	모	o	B	
1987	국방부, 육본	4	이이동	이순희	여동생	o	B	
1987	국방부	41	정연관	임분이	모	o	A	
1987	국방부, 기무사	63	김용권	박명선 박광질	모 이모	o	B	
1987	국방부, 기무사	64	최우혁	최봉규	부	o	A	
1989	공안합수부	19	이철규	이정진	부	o	A	
1989	경찰	30	이재호	이순례 강성춘 처남	여동생 △	o	B	
1991	안기부	21	박창수	김정자	모	o	A	
1991	경찰	27	문승필	오순례	모	o	B	
1992	기무사	18	박태순	홍흥유 박희순	모 누나	x	B	
1995	경찰	23	이덕인	이기주 김정자	부 모	o	A	
1997	대한민국	22	김준배	김현국	부	o	B	
1997	경찰, 재단	79	박동학	박동선	누나	o	B	

표1. 표본 추출된 사건 및 구술·증언 녹취 진행 현황.

A=김보덕, 심주형 B=이수연, 최윤정 / O=회원 △=명단만 있는 경우(소극적) x=회원아님

II. 본론 - 피해의 유형

1. 변사사건에서 의문사 사건으로의 전화

의문사 유족들은 사건발생 소식을 전해듣는 이 순간부터, 사건 관계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관계기관의 일방적이고 은밀한 사건처리로 기인한 것이며, 유족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계기관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유가족에게 알리고, 그들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일방적인 일 처리로 일관함으로써 유족들이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그리고 이는 사건을 관계기관의 철저한 통제권 안에 두려는 것으로써 하나의 변사사건을 의문사로 남기는 결과를 낳으며, 추후에 유족들의 진상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진상규명의 장애물로 기능하였다. 또한 관계기관의 이러한 사건처리 방식은 사건의 발생과 내용에 많은 모순이 존재함에도 사건이 공론화되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여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으로 남도록 한다.

1) 사건은폐·축소 시도³⁾

사건이 발생한 후 가장 먼저 유족들이 받는 피해는 죽음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사건의 은폐와 축소 시도이다. 사건의 은폐와 축소를 위해 관계기관들은 사건발생 자체를 올바로 알리지 않는 것을 시작으로, 유족들의 사건현장·증거물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사건현장·증거물을 훼손시키며, 유족들에 대한 감시, 협박, 회

3) 장례를 빨리 치르도록 독촉하는 것 역시 이 부분에 해당하지만, 장례 과정에서는 여타의 복합적 문제들이 동시에 드러났다고 보여 별도로 범주화·기술한다.

유를 하였다. 더 나아가 죽음의 의문이 공식적으로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족에게 ‘자살임을 시인’하는 각서나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쓸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이렇게 공공연히 나타나는 사건은폐·축소 시도는 유족들이 그 죽음의 원인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게 하는 첫 출발점이 되었다.

(1) 사건 ‘발생자체’의 은폐 시도

관계기관은 유족의 연락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친척에게 사건의 발생을 알려주기도 하고, 사건 발생 자체에 대해 거짓통보를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유족들은 사건이 발생했음을 친척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게 되거나,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온 가족이 동원되어 경찰서와 각종 종합병원과 영안실을 돌아다녀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

<먼 친척을 통해 연락>

경찰은 가장 먼저 사건의 발생을 집으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시골에 사는 큰아버지 댁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화로 전했으며, 후에 큰아버지가 오촌집에 연락, 오촌이 어머니 집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되었다(우종원 어머니의 구술 정리).

<주소지가 분명함에도 이웃을 통해 연락>

86년 6월 11일에 서울 시경 대공파(‘인천연안가스’ 사장에 의하면)⁴⁾에서 나온 3명이 연행해갔는데 6월 20일경 서울에서 조카딸에게서 신호수가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는 연락이 왔다. 이를 조카딸이 우선 자신의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였고, 다시 이분이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아버지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다. 먼저 신호수의 회사를 찾아갔고 다음은 서울 시경으로 갔다. 그러나 시경에는 대공파가 없다고 하여 그 사람들과 다투는 뒤 어떤 사람이 아버지에게 종로구청 뒤편에 있는 건물로 가보라고

4) 구술 내용 중 괄호 속의 글은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덧붙인 것이다.

하였다. 그곳에 찾아가 사건일지를 조사해보았으나 신호수의 이름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곳 경관에 의하면 '대공'문제라면 전국 어디에서든 연행할 수 있으니 집에서 연락을 기다리라고 충고하였으나, 그 뒤 여러 곳들을 찾았다니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6월 21일에 누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동네 이장이 여수 대미산에서 신호수가 자살했다는데 이 사실을 아는지 물었다고 한다(신호수 아버지의 구술 정리).

<연락받지 못하여 행방을 찾았다님>

결혼해서 2년 가까이 형님하고 같이 살다가 돈이 없어서 사글세방에서 따로 나가 살았어요. 근데 연락이 왔어요. “어제 나갔는데 연락이 없다.” 그때까지 이런 일이 없었던 말이지. 늦으면 늦는다고 이야기하고 … 이제 찾으러 가는데, 영등포로 갔으니까 영등포 경찰서로 가야 할 것 아니야 … 나는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고, 파출소에 가서 물어봤다고. 거기에 없다고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경찰서 다 뒤진 거 아니에요. 일주일이 지나, 열흘이 지나도 … 그때가지고 그때부터 종합병원을 돌아다니다가 시작했어요. 큰 병원에 가면 응급실 찾아보고, 혹 영안실도 찾아보고 … 그러다가 34일만에 형을 병원 중환자실에서 찾았는데 경찰서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오리발을 내놓고 보는 거야 … 내가 증거를 찾아가니까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변명하기 바쁘고. 게네들은 “오래돼서 기억이 안난다” 그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서류 주니까 그때서야 “기억이 난다”고 그러고. 서류 주기 전에는 모른다고 그러더니 이것 주니까 내가 했대(김상원의 동생).

<거짓 통보>

87년 2월 20일날 10시쯤 됐을거야, 용권이 부대 캠프 인디안 부대 인사계 김 뭐시기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용권이가 없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 “내무반은 봤냐”고 하니까 “샅샅이 다 찾아봐도 없어요”하는 거예요. (부대에 가서 사망 사실 전달받은 후) “아까 내무반도 샅샅이 찾아보고 했다고 했는데 왜 내무반에서 용권이 가 죽었냐”고 내가 막 있는 데로 없는 데로 팔팔 뛰니까 … “아침에 인사계에서 전화했을 때는 혹시 어디 친구집 갈 데 없냐”고 까지 물었었다고… (김용권의 어머니).

(2) 시신 · 사건 현장 · 증거물에 대한 훼손과 조작 및 접근금지

대부분의 유족들은 사고현장에 직접 가서도 시신, 사건현장, 증거물을 보지 못하거나 사건 현장, 증거물을 훼손당한 경험을 겪는다. 시신, 사건현장, 증거물은 처음 목격되었을 때의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관계기관은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은폐하기 위해 이를 모두 무시하였다.

<시신 확인 금지>

가족들은 고인의 시신조차 볼 수 없었다. 고인의 주검은 이미 입관돼 봉해진 상태로 유족에게 전달됐고, 그대로 장례가 치러졌다(최종길의 미망인).⁵⁾

<시신 접근 금지>

눕혀 놓고 둘러싸고 보지도 못하게 해.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그때서야 만져볼 수 있게 됐어(장석구의 미망인).

<유서 조작>

그러다가 군대에 가서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내가 가서 “왜 죽었냐”고 물어보니깐 자살을 했대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부대에서는 자살을 했다고 유서를 보여주니깐 나는 자살을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유서내용을 보니깐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 있더라구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게 유서가 아니었더라구요. 보안사령관이나 정보 담당관에게 누구누구 귀하 하는 식으로 썼는데 그 제목을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거야 내가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깐 유서와 같은 거지(한희철의 아버지).

<사건현장 접근금지>

5) 이하 ‘최종길 미망인’의 사례는 “인간탐구: 의문사 1호 고 최종길 교수 부인 백경자”, 『주간 한국』(2001. 12. 27.)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기사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www.hankooki.com/whan/200112/w2001121916372461520.htm>

현병대 가서 물어보니까 인사계가 나와 안내를 했는데 아들 죽은 장소를 보니까 거기 지키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모포를 덮고 못 보게 하는 거야, 현병들이 먼저 봐야 한다구, 현병이 와야 하고 하는 이유를 대더라, “법의학자가 봐야 한다”는 거야. 법의학자가 “총 2방으로 죽었다”, 법의학자가 “왼쪽엔 검은 피, 오른쪽엔 빨간 피, 머리에 피는 골편과 함께 하얀 액체가 있더라”, (그래서 내가) “자기 가슴에 두 방 쏘고 안 죽어서 머리를 썼다, 말이 되느냐”(고 하니까 법의학자가) “일곱 방 맞고도 산 사람이 있으니까 말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자기 가슴에다 쏘고 머리에 쏴서 죽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자기는 안 해 봐서 모른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왜 왼편오른편 피 색깔이 다르나”(고 물으니), “혈액 색이 다를 수는 있다” 하더라구. 내가 “이 개같은 새끼….”하고 욕을 했다(허원근의 아버지).

<증거물 훼손>

회사측에서는 자기네랑 관련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을 하고 … 그러지만 우리들은 아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그거거든요. 사건이 일어나고 피해자가 피묻은 유물을 남겨놓고 유족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정상인데, 어떻게 피묻었다고 그걸 경찰이 빨아버리고 그게 말이 되요? 그래서 왜 빨았냐고 하니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전단지 배포를 할라고 빨았다”는데 그게 말이 되냐구요(이재호의 처남).

<사건현장 은폐>

온갖 힘을 부리면서 경찰에 가서 해도 안되고 조사한 것도 없고. 경찰서 가서 말해보면 경찰들이 내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말도 없고. “나는 아들이 어디서 죽은 지 모르니까 가보시오”, 그런 말만하고 … 하루는 산으로, 하루는 들로, 하루는 바다로 시동생하고 같이 천주산으로 불목산으로 대우중공업 앞산 뒷산으로 다 찾으러 다녔어요. 유골 나타났다고 해서 찾아가 보니까 시동생이 그 자리가 이전에 갔던 자리래요. “여기 내 왔던 자리네요.” 그러는 거라. “목매단 자리라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요기가 길인데 내가 와서 대우중공업 내려다보려고 이 자리에 와서 담배 빼물고 했던 자리인데 그 때 이 자리에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러는 거에요. 현장에 나타난 담당

검사는 내가 유골을 가슴에 안고 있으니까 나 한번 보고, 영감 보고, 그리고는 내려가 버리더라. 오른쪽에 뭐가 있고 왼쪽에 뭐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 우리가 (유골 찾고) 버스를 타니까, 그 안에서 아들이 150만원 때문에 (자살했다)라는 보도가 나가더라. 최강태라는 검사는 마음으로 조사를 안하고 … 그런 사람이 지금은 서울에 높은 자리에 있어(정경식의 어머니).

<사건현장 훼손, 관련자 은폐>

그래서 현장을 가보자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종사촌하고 내무반에 가서 본 거야. 전기스탠드로 목을 매달고 있었고, 선(목을 맨 도구인 스탠드선)을 잘라 가지고 옆으로 눕혀 놨더래. 그래서 내가 내무반도 살살이 뒤쳤는데 없다고 해놓고, 엄마도 오고 있는 중인데 그대로 냅두지 않고 되는 데 잘라 가지고 눕혀 놓고 … 그리고 우리가 그때 막 알아보러 다닐 때, 추○○라는 사람을 찾아 보라 하니까 어느 부대에도 ‘추’자도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내가 우리 친척 누구누구라고 딱 말하고 나니까, “아무 날 몇 시에 김용권이가 추봉엽이를 면회 왔다가 거기 구경시켜주고 무사히 보냈다, 택시 타고 가라고 차비도 줬다” 그러는 거야. … 추○○의 ‘추’자도 없다고 하다가 내가 우리 친척 누구누구라고 하니까 그제야 …(김용권의 어머니).

(3) 유족에 대한 협박, 회유

관계기관은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족들에게 폭력을 동원한 ‘협박’을 하거나 보다 효과적인 유족의 설득을 위해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을 이용한 ‘회유’⁶⁾를 한다. 그리고 ‘추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기도 하였다.

6) 이렇게 친척을 이용한 회유 시도는 유족이 관계기관에 협조한 친척과 관계를 기꺼이 끊도록 만든다. 이에 대해서는 ‘의문사 사건으로부터의 피해’ 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협박, 각서작성 요구>

수사발표내용을 메모하면서 조목조목 질문을 하려는 저에게 갑자기 아주 큰소리로 “당신은 누구야!! …”라며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어떤 군인이 나서며 분위기를 살벌하게 몰고 갔습니다. 후에 알게 됐지만 205보안부대 운영과장인 김동식 소령으로 짐작합니다. 그의 발언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월북기도협의자 가족, 즉 빨갱이 가족이 무슨 군소리하느냐?”는 투였습니다. … 그 다음에는 타이핑된 장인 명의의 각서(“조사 받던 중 처벌이 두려워 … 자살하였다”는 사실에 이의 없으며 차후에 형사상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에 날인하는 것을 요구, 이미 무너진 둑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이윤성의 매형).⁷⁾

<회유>

아버지하고 같이 인천 시장이랑 만나면 “무슨 조건이든 다 들어줄 테니깐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자꾸 그러는데, 아버지가 “나는 내 아들을 돈하고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오지 말라”고 그리고, 그리곤 계속 싸웠어요(이덕인의 어머니).

(4) 사건증인에 대한 회유와 협박

유족들은 관계기관이 주장하는 사인에 대한 의구심으로 출발하여 진상규명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은 관계기관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사건의 증인들을 협박하고 회유하였음을 알게 된다.

<증인 협박>

김제역 옆에 있는 파출소에서 경찰관들이 김제역 역무원들한테 “말조심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시끄러워진다”고. 그리고 나중에 인제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김제역에서 근무했던 역무원 한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목포에 계시는 누님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는 양심상 도저히 이런 것을 숨길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직접 목

포 고향의 누님한테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그렇게 해 가지고 누님한테 연락이 와서 누님이 가서 대담한 것을 얻지 않고 녹음을 했어요. 거기 에 보면 “자기네들이 이 사건은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 동료들이 다 목숨을 걸고 다 폭로하고 싶다”(김창수의 아들).

<증인 협박>

거기에서 장사를 하려면 경찰한테 뭔가 아쉬운 소리도 해야하는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얘기를 해주겠어요? 찾아가서 사정사정하면서 물어보는데 말도 못 붙 이게 하더라고. 경찰 놈들이 다 알려준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불러 가지고 “그 놈(구술자)이 찾아가니까 너네들 말조심해, 알았지”하면서. 차비 주고 담배사주고(김상원의 동생).

그때 당시 시신을 남인천 병원 원장이 봤는디, “누가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나”고 했데. 그 말을 듣고 사흘만인가 내가 찾아갔지. 찾아가니까 “자기는 보지도 않고 전혀 그런 말도 한 적이 없다”는 거야. 경찰들이 압력을 해부렸는 갑서 … 우리가 들어가니까 우리를 보자마자 그 부인이 더 난리여. 여자가 “우리는 안 봤다”고 더 난리여. 형사들이 얼마나 압력을 넣어 부렀는지 …(이덕인의 어머니).

2) 부검을 둘러싼 문제들

사건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간 유족들이 겪게 되는 관계기관의 일방적인 사건처리 중의 하나는 부검과 관련한 것들이다. 부검은 ‘죽은 사람을 또 죽인다’, ‘관계기관이 사인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견해 때문에 많은 유족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유족들은 유족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부검을 해버린 경험을 하기도 했고, 강제로 부검 동의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받아 부검을 당하기도 했다. 더 나아가 박창수, 이덕인의 유족의 경우 시신을 탈취당해 강제부검을 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반대로 유족들이 부검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경우도 있었다.

7) <http://leeyoonsung.hihome.com/>의 “자유게시판”

(1) 동의 없는 강제부검

유족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부검을 해버리거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끌어안고 싸우다 시신을 공권력에 의해 빼앗겨 강제부검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박창수 유족의 경우는 영안실 벽을 뚫고 들어온 경찰들에게 시신을 빼앗겼다.

<사건현장 도착 전 부검>

내려가기 전에 부검도 다 해치웠어 …(김성수의 어머니).

<시신탈취, 강제부검>

전경들이 우리 창수를 빙 둘러쌌지. 그러니까 악이 막 바치는 거야. 그래 내가 어항을 깨서 유리를 들고 젓어 버릴라고 하다가, 그건 안되겠다 싶어서 막대 결례를 부러뜨려서 잡았지. 우리 창수한테 손대면 죽인다는 그런 심정으로 … 그리고 있는데, 창문으로 노동자 학생들이 밀려들어온 거야, 그래 우리 창수를 끌어안았지. 그때는 아버지는 없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그때 경찰서장이니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부검해야한다 그래서 부검한다. 부검하되 우리 쪽에 사람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봤데.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 그리 시신을 뺏어가서 지네들이 해분 것이지.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백 명이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걸이라고. 그런데 즈그들이 벽을 깨고 들어와서 나를 불들고 … 한참 있으니까 한 놈이 오더니 나에게 “부검하니까 입회하라”고 하는 거야. 그때 내 생각에 내가 뭘 알아서 부검에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 생각에 내가 들어가면 부모입회 하에 부검이 진행되었다고 할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누가 보내서 왔냐”고 내가 소리를 질렀지. 그러니 도망가버리네. 그래, 즈그 단독으로 부검을 진행한 거지. 지네들은 완벽하게 할라고 했는데 안된 거지(박창수의 어머니).

<시신탈취, 강제부검>

그래서 서강병원은 좁으니까 중앙 길병원으로 가자고 그래서 길병원으로 옮겼어. 그날 저녁에 밤중에 대학생들이 보니깐 인천시장 놈이 거길 왔더래. 그래서 간 뒤로 한 10분인가 있다가 쳐들어 왔어. 새벽 세 신가 네 시쯤 되어서. 병원을 다 때려부수고 쳐들어 왔어. 다른 상객들(영안실의 다른 상주들을 만나러 온)도 그 사람들도 우리편인 줄 알고 다 두들겨 부렸어. 다 것어 부렸어. 대학생들이 코피가 흐르고 … 와 사리판이 되어부렀다니깐. 명지대 학생 하나는 설명되어 부렀다니깐. 그렇게 치열해 부렀다니깐 … 그래서 내가 가서 “느그들 주동자가 누구냐” 그러니깐 나서지를 않는 거여. 그러더니 나를 방패로 밀어가지곤 한 구석으로 밀어버리고는 … 안에 큰 아들이 냉장고 앞에서 동생 시신을 지키고 있으니깐 전경들이 “너는 누구냐” 그랬데요. 그래서 우리 동생이라고 유족이라고 그런게 한 놈이 “너도 죽여야 한다”고 냅다 간다 두들겨 가지고 그때 엄청 고생했어요. 맨발로 그냥 절질 끌려가면서 … 그래가지고 한쪽으로 밀어 부쳐가지곤 “고깃덩어리 실어”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냉장고 문을 열더니 시신만 쏙 빼 가지고 실어 가지고 … 이렇게 억울하게, 시신을 도둑 맞아 가지고 갈갈이 췄어 가지고 … 너무너무 억울해 죽였어요(이덕인의 어머니).

(2) 부검의 강요

관계기관은 유족들에게 부검을 한 후에야 시신을 인계 받을 수 있다. 부검을 해야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검을 강요하였다. 관계기관의 부검을 강요하기 위한 방법은 다양했는데, 직접적인 협박을 하거나 위압적이고 강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검동의를 얻어내기도 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부검을 행하기 위해 유족의 요청을 묵살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족에게 부검시 해주겠다고 약속했던 사항들을 지키지 않기도 하였다.

<부검동의서 날인 강요>

먼저 부검을 한 후에야 시신을 인계할 수 있다며, 부검동의서에 날인하도록 강요

했습니다. 문장은 “월북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처벌이 두려워 목매 자살했다”는 일방적인 수사발표 내용을 가족들도 기정사실로 시인하며 사인을 규명코자 부검에 동의한다는 식으로 타이핑된 것이었습니다. 장인은 자식을 두 번 죽일 수 없다며 부검을 반대하셨지만, 부검을 하지 아니하고는 시신을 인계할 수 없다는 분위기 때문에 결국 부검을 동의하셨습니다. 다만 남은 가족들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월북혐의로 조사받던 중 …” 부분을 “불온 뼈라를 소지한 혐의로 조사 받던 중 …”으로 고쳐 줄 것을 간청하여 허락(?)을 받아 부검동의서 문장을 고치게 한 뒤에 장인께서 도장이 없어서 지장을 낼뻔했습니다. … 또 다른 문제는 가족이 부검장에 입회를 해야 부검을 시작할 수 있다며 가족입회를 강권했습니다. 설왕설래 끝에 막내사위인 제가 부검장에 입회하기로 결정하고 제가 부검장(영안실)에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검장으로 들어갔을 땐 부검현장 경험이 없는 제 눈에 보기에도 부검은 상당히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입회해야 부검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꿰맞추기 위한 술책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미 개복절개한 상태였고, 장기의 일부를 정밀검사하기 위해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국군과학수사연구소의 군무원)이 젊은 다른 사람(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국군과학수사연구소의 군의관 대위, 법의학 전문의 수료 전에 입대하여 경험이 많지 않았다고 함)에게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이윤성의 매형).

<강제적 분위기 조성을 통한 부검강요>

“부검을 해야만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다” 그러구 부검의를 새로 정하려면 한 달 이상 걸린대, 그래서 군대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철저하게 은폐를 할려면 부검을 해야한다 … 그런 생각이 든다(허원근의 아버지).

<약속 불이행>

부검 역시 처음에는 국과수(국군과학수사연구소)에서 행한다고 하였으나 나중에 알아본 결과 사복을 입고 군부대에서 부검을 한 것이었다(정연관의 형)

<유족 요청 묵살>

부검을 변호사 입회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쪽에 계속 연락을 해도 안 된다 그래. 변호사 입회하지 않으면 부검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네” 하고 대답은 하는데, 우리가 어디 연락할 길이 있나? 방법이 없었지. 당신들이 부검을 할 자기가 바빠 가지고. 아 그 공갈에 넘어가 가지고 내가 그 날 부검을 해버렸고. 공갈도 공갈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강력하게 했다지만 나는 그런 주변이 없는 사람이야(최우혁의 아버지).

<부검동의서 작성 강요>

부검할 때 강제로 억압적으로 도장 찍으라고 그러드래요. 부검한 디 너무 끔찍해서 보지도 못하고 나왔데요. 억지로 두들겨서 끌고 갔어 다니까요 … 맨발로 끌려갔다니까요. 동의서에 도장을 찍으라더래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있는데 왜 찍어야 그려니깐 “볼라믄 보고 말라믄 말아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왕에 왔으믄 봐야 할 것 아닌가 하고 들어는 갔는데,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었데요(이덕인의 어머니).⁸⁾

(3) 부검동의서 조작

부검을 하기 위해서는 유족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은 강제적인 부검을 실시하거나 협박을 통한 부검동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유족에게 아예 부검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부검을 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유족의 도장을 임의로 만들어 부검 동의서를 첨부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가 있다.

<부검회피와 동의서 조작>

부검 때문에 한참 싸웠죠. 그 사람들 말은 “부검 못 한다. 군에서 죽으면 시체 못가져간다” 그것 때문에 나는 “부검을 해야겠다”, (그 쪽은) “못하겠다”하고 무지 싸웠

8) 부검에 입회한 이는 이덕인의 형.

어요. 결국은 계네들이 부검동의서를 붙였더라고요. 서류에는 우리보고는 부검하지 말라고 그래놓고는 결국에는 막 우기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백부님한테 전화를 하자. 백부님이 하지 말자고 하면 하지 말자”. 백부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자기가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하라는 데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백부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한 거예요. 그때는 부검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 놈들이 이거를 조개서 까뒤집고 어쩌고 뭐니 이런 게 부검인데 이런걸 왜 하느냐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래요. 죽어도 해야겠다니까 군에서 “죽은 사람은 안 된다”고 말이 바뀌더라고요. 결국은 못했는데 헌병대 조사서에는 “부검을 했고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다”라고 찍혀 있더라구요. 자 기네들이 도장을 임의로 파서 가라(가짜)로 넣은 거지요. 저는 군대를 모르니까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부검을 하는 것을 알면서 저한테 부검은 안 된다 그런 거죠. 자 기네들이 안 된다고 그래놓고는 왜 거기다가 부검에 이의가 없다는 것을 붙였겠어요. 나쁜 놈들이에요(한영현의 형).

<부검동의서 조작>

부검동의서에 아빠 도장이 있더라구요. 오빠한테 물었어요. “도장 찍어준 적 있느냐 …” 그 때 당시 군대에서 도장을 요청한 적 없었는데 … 오빠는 “아버지는 내가 알기로는 목도장이 없다고 해요”. 부검은 안 했지만 동의서는 있는 거예요(이이동의 누나).

(4) 부검 회피

어떤 유족의 경우에는 사건 진상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부검을 원하기도 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는 부검을 거부했다.

<부검회피>

부검했죠. 지금은 흔하게 부검하지만. 부검도 안 해 줄라고 그랬어요. 이런 미해결 사건은 부검을 해야하는데, 이 새끼들이 부검 신청을 해도 안 받아 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데, 수사과 놈들하고.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우리가 우겨 가지고 부검을 했고(김상원의 동생).

3) 장례를 둘러싼 피해

대부분의 유족들은 장례를 하는 과정에서 각 기관들의 개입을 받았다. 장례의 방식을 강요받거나, 장례를 빨리 치를 것을 강요받았으며, 장례를 치르기로 하면서 했던 약속이 깨지는 경험을 했다. 유족들은 이를 관계기관이 장례를 통해 사건이 확대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마저 편안히 보내지 못했음을 가슴 아파했다.

(1) 장례방식의 일방적 결정

장례의 방식, 즉 화장을 할 것인가, 매장을 할 것인가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유족이 해야할 것이지만, 특히 군의문사의 경우 유족이 매장을 원함에도 화장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증거 인멸의 효과를 낳기도 하였는데, 유족들이 관계기관의 잘못된 사인추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했다.

<화장 종용>

장인께서는 이미 가족묘지를 할 땅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매장하기를 원하셨고, 장례식이 끝났으므로 시신을 인계 받아 돌아오려고 했으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에서 죽은 군인은 법에 의해 화장을 해야한다며, ‘매화장 및 사체처리 위임장’을 타이핑한 서식을 내밀며, 언제 새겨왔는지 나무도장으로 날인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 상당시간 설왕설래 … 이미 날은 저물어 상당히 지체된 밤이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서는 끝없을 것 같은 자포자기 심정에서 그 서류에 날인하게 되었습니다(이윤성의 매형).

유골도 못 가지고 왔어요. 유골도 거기에서 뿌려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뿌렸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군대를 갔다왔다던가 하면 알았을 텐데 군대도 모르지 이런 상황에서 그 놈들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래서 유골도 못 갖고 왔어요(한영현의 형).

<가매장>

아버지는 경찰에게 아들의 유품인계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사체와 매장해버렸다고 하였다(신호수 아버지의 구술 정리).

(2) 장례 독촉

유족들은 ‘시끄러워진다’는 미명 하에 장례를 종용받았다. 이는 사건을 빨리 ‘매듭짓기’ 위한 관계기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직접적인 개입과 협박, 회유를 일삼았다. 예를 들면 시신이 보관되어있는 냉동고의 전원을 끊어버림으로써 유족들이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고, 여러 조건을 내건 회유와 협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관계 기관뿐 아니라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친척이나 그 지역 공무원들을 통해 장례를 종용하였다.

<장례 독촉>

화장터에 갔더니 그놈들이 자꾸 재촉을 하더라고. “빨리 화장하라”고. 그때 난 신부님을 오시라고 부탁을 했거든. 근데 안 오시는 거야. 그래 독촉을 받고 화장을 한 거야(한희철의 아버지).

전방에 갔다가 와서 여관에 들어와 있다가 장병들 5-6명이 왔는데 “원근이 하나 죽어서 전방이 뚫릴 수도 있다, 전방 지킬 사람이 시신을 지키려 나와 있다” 이거야. … 화장한 유골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 동의만 해주고 유골보관증에 도장만 찍

어주고 그냥 집에 가버렸지(허원근의 아버지).

장례를 빨리 치르라고 했거든요, 경찰 측에서 … 서로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빨리 치렀으면 했다구요. 우리 역시 아버님이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뭘 모르시고 자식 죽었는데 오래 놔두기도 그래서 빨리 했죠. 경찰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하기는 했죠(이재호의 여동생).

그리고 나서 장례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는 거야. 용권이의 대령이라고 하고 인사계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오네. 우리는 분한거야. … 장례를 치르라고 하도 그러길래. “사인규명이 되고 나서 장례하지, 절대 안 한다” 했는데, 대신 “자기네가 화장해 가지고 가루를 주겠다”고 “시신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 손을 대면 너죽고 나죽는다”, 그 때부터 재크 나이프를 갖고 다녔어. 그래서 장례를 19일만에 했어. 죽은 놈은 땅에 묻혀야 하지만, 진상 밝힐려고 했는데 나라고 마음이 편하겠어(김용권의 어머니).

군 의원들까지 나서서 빨리 장례하자고 독촉했어. 보상까지 해주겠다. 그런 압력을 받아왔어. 아들 직장까지 떼어버리겠다고. 군수까지 그래 가지고. 결국 한달 3일 만에 장례를 치뤘지(김준배의 아버지).

그 쪽에서는 계속 장례를 하라고. 정보과형사들도 미결로 잡는 것은 안 좋다고 그랬던가 자꾸 장례를 하라고 …(박동학의 누나).

<장례 독촉·회유, 친척을 통한 압력>

게다가 경찰서에서 조카가 중구청 시민국장(?)으로 있는데 어떻게 인적사항을 알았는지 장례를 하라고 압력을 넣은 거야. 하루는 조카가 오더니, 언니한테 직접 얘기 못하고 우리들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니 새끼 한 번 죽어봐라, 너 장례식 하겠냐” 그랬더니 그래도 빨리 장례를 하라고 공직에 있으니까 귀찮다고 막

하는 거야(김용권의 이모).

<직접 개입>

너무너무 억울해서 내가 끝까지 물고 늘어 걸라고 … 한 1년 정도 우리 아들 시체 놓고 빼 댈라고 했는디, 이 개자식들이 얼마나 냉장고를 조절하고 냉겼는가 5월~6개 월 되니깐 시신이 비글비글 되가지고 … 드라이 아이스 사다가 넣고 그랬어요(이덕 인의 어머니).

4) 감시와 통제

유족의 대부분은 가족의 죽음을 당한 후부터 장례를 치르는 과정까지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 아예 집 주변을 관계기관이 둘러싼 채 감시하거나 괴전화가 걸려오는 경험을 한 유족도 있었다. 이러한 감시를 통해 관계기관들은 유족들의 생활과 활동을 통제하려 하였는데, 그 결과 유족들은 행동의 제약을 느껴야 했으며 감시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 역시 겪었다. 그리고 각 기관의 감시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웃과 친척으로부터 가까이 하기에는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혀 그들과 다시 예전과 같은 관계를 맺을 수 없기도 하였다.

(1) 장례 감시

대부분의 유족들은 장례를 감시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관계기관은 사건이 확대되는 기폭제가 될지도 모르는 장례식을 감시하며 조문객의 명단을 적어갔으며, 장지에서 하관하는 것까지 감시했다.

장례 때에는 경찰들이 찾아와 조문객들의 이름들을 적어갔다(김창수의 아들).

장례 치를 때도 금촌에 남원 묘지라는 테서 했는데 … 서대문 구치소에서 적십자 병원으로 내다쳤는데 형사들이 관 내릴 때까지 요리고 쳐다보고 있었어. 그래서 둘째 삼촌이 막 화내고 그랬어. 우리를 어찌지는 않았지만 어찌 그리 양양해요. 금촌파출소, 금촌경찰서에서는 다 동원됐겠지 뭐(장석구의 미망인).

1983년 6월 20일 백련사에서 장례시 기관원 대 여섯 명의 감시 …(김두황의 형)⁹⁾.

그 당시 우종원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화장을 하게 되었다. 경찰들은 계속 집 주위에서 감시하였는데 누가 조문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고, 이를 어머니는 자살로 죽은 아들인데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 이상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었다(우종원 어머니의 구술 정리).

학생들 오고 주임교수랑. 재야에서도 오지,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서도 오고 그러지. 그러니까 사건이 시끄러워질 것 같은가봐. 부대장이 제지해버리고 조문도 나중에는 통제를 하더라고. 네 사람이 조문을 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들어와라 이렇게 … 그 당시에 말은 안 했지만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심상치 않았다는 거야. 소요사태가 일어날 것 같더라, 그럴 것 같아서 강제로 했다는 거야(최우혁의 아버지).

심지어 나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오는 친구들을 경찰을 주둔시켜놓고 이름 체크해서 … 조문 못 오게 명단 적어서 보고하고 그랬다구. 누나는 준배 사건 듣고 … 울산에 살고 있었는데 … 경찰이 못 올라오게 해서 병원에 못 오게 했더라고 … (김준배의 아버지).

장지는 경기도 마석의 황량한 모란공원묘지. 장례행렬 때도 영구차의 앞뒤로 정보부의 감시차량이 배치돼 있었다. 영구차가 지나는 운행코스도 서울대 앞길을 절대

9) 이하 ‘김두황의 형’의 사례는 직접 작성한 글을 E-mail로 받은 것이다.

거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정보부에 의해 철저히 감시·통제 당했다. 서울대생들의 시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였다(최종길의 미망인).

장례할 적에 시체를 꺼내와서 용산 영안실에 차를 대고 시체를 꺼내 올라고 하는데, 거기에 백골단들, 경찰들 등 짹 깔렸어. 나는 백골단들 보면 더 달려들거든. 근데 밥은 못 먹었지 기운은 없지. 그래서 용산 병원 바닥을 설설 기어다녔어. 그날 아침에 청심환 하나씩 먹고 재크 나이프 칼 하나 쥐고. 그때는 누구든지 저거 하면 쑤셔 버릴 각오였어. 그때 계훈제 선생님 등 재야에서 막 왔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기어 당기면서 백골단 애들을 막 물었어. (김용권 어머니의 구술) 영구차를 저기에 넣두고 우리 언니를 영구차에 무조건 실으려고 했으니까. 그때 거기다 갖다 실으려고 그랬어… (김용권 이모의 구술) 근데 애(이모)가 딱 오더니 “언니, 재야 어른들 다 닦장차에 다 실었어” 하는거야. 그래서 그 차에 올라가서 여기 우리 용권이 손님을 닦장차에 태워 가지고 감방에 보내면 되냐 다 내려놔라, 그러면 장례 안한다, 우리가는 영구차에 같이 타자. 그러니까 나중에 내려 가지고 영구차에 탔지. 그리고 자꾸, 나(모친)만 부대안으로 데리고 들어갈라고 하는거야. 띄어 놓으라고 그러는거야. (김용권 어머니의 구술) 그래서 내(이모)가 “언니는 여기 손님들 다 태우고 제일 마지막에 타라” 그랬지. (김용권 이모의 구술) 용산미군부대 17레이트에 용산 주변에 다 경찰들 깔아놓고 부대 안 성당에서 영결식했어. 그리고 나서 서울대를 둘러가 가려고 했는데 재야 장로 한 분이 “용권이 어머니, 이거 서울대가는 길이 아니라 용미리 가는 길”이래. 분명히 서울대를 둘러서 가기로 했는데, 서울대 못가면 봉천동 강뚝으로 라도 가자… 이게 평생 한이다… 전부다 해주겠다고 했어요. 서울대 정문으로 들어가서 뒷문으로 나오는 거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할려고 맘을 먹었었던거야. 영구차에서 육본에서 와서 내(모친)를 둘러쌌어. 지나고 보니까 서울대를 못가면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지 싶었나봐. 옆을 보니까 등빨 이만한 사람이 앞, 뒤에 있어. 밖에 보니까 경찰차가 윙윙거리고 서울대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는거야. 그래서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창문 다 닫겨 있지. 그래서 내가 버스 운전수 핸들 꺾어서 사고라도 내버릴려고 했는데 꽉붙잡고 안놔줬어. 그래서 안되가

지고 육본에서 온 사람한테 그 얼굴에 대고 침을뱉었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이런 법이 어딨냐”하고 나중에는 침이 마르니가 손을 물어버렸어. “너도 서울대 경영학과 다니는 자식, 데모했다고 이렇게 죽여놓으면 맛이 어떤가 봐라” 하면서 … 그 군인도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라 … 그래서 용미리로 가면서 우리는 “그래 가자, 가서 우리는 도로 싣고 올끼다”, 내가 그랬어 “하관 안하고 내가 업어서 며칠을 걸어서라도, 리어카에 싣고 밀어가지고 온다. 가봐야 소용없다” 그랬어. 용미리 가니까 난 돌아간다고 막 하니까 계훈제 선생, 박형규 목사님 등 재야식구들이 설득을 하시더라구. 그래 가지고 하관을 했어(이상 김용권 어머니).

(2) 영안실 감시

이놈들이 영안실을 빙빙 돌면서 얼마나 감시를 하는지 벽에다 붙여놓은 벽보를 모르게 띠어뿔고 … 영안실 안에까지 와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그랬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오냐”…(이덕인의 어머니).

병원에 가서 주위상황을 봤더니 영안실 주위를 사복경찰이 둘러싸고 있었고 … 아들이 정말 죽었나 … 영안실 냉동실에서 나오더라 … 기절을 했지 … 다시 정신을 차리고 아파트로 갔어. 수위는 이미 교대시간이 되서 바꿔졌고 … 그 주위도 경찰이 짹 둘러싸고 있었어(김준배의 아버지).

(3) 일상생활 감시

이듬해인 1974년까지도 유족의 집 앞 골목엔 정보부의 감시요원이 지키고 있었고, 그들이 철수한 후에도 보이지 않는 감시와 압박은 계속되었다. … 유족은 아무런 항변조차 할 수 없었다. 서울 퍼런 1970년대 유신치하의 상황이란 그런 것이었다. 사건 직후부터 정보부에선 “절대 외부에 떠들지 말라”며 유족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했고, 특히 외신기자들과의 접촉을 철저히 견제했다(최종길의 미망인)

사건의 연락을 받은 후로 집 주변에는 경찰들이 감시하기 시작하였고,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우종원 어머니의 구술 정리).

서울에서 같이 강릉으로 내려오니까 집 주변에 정보부 사람들이 꽉 둘러싸더라고.
… 형사들이 안기부사람들이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맨 날 감시하고. 넘버를 알아봤더니, 성수 선배들이 알아봤더니 형사더래 … 학생이 하나 죽었는데 뭔 놈들이 저리 많이 왔나 …(김성수의 어머니).

항시 사복을 입은 경찰이 있었어 … 경찰 표가 나던데요 …(정경식의 어머니).

형제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집 주변에 경찰 다 깔아놓고, 들어오는 사람 가방 다 뒤지고, 저 집 학생이 빨갱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리랑 얘기를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친척 간에 들어오는 거 전부 막고. 경찰을 한 6개월 동안 깔아놓고. 그래서 우리 언니가 “사람 죽여 놓고 누굴 지키냐”고 망치들고 차 때려 부수러 나가니까 도망가 버리더라. 저 너머 옥상에 가서도 감시하는거야. … 우리가 볼일이 있어서 나갈라고 하면 차가 딱 나서서 “어머니 제가 보호할께요. 보호할께요” 그러면서 따라나선다. 그러면 “우린 너희 보호 안 받는다” … 그리고 전경들, 우리 남대문 시장 가는 길에 계속 따라 나서는거야. 보호한다고 따라나서고 … 인권위원회 목요기도회 할 때 시장보는 것처럼 해서 봉창으로 몰래 나갔어. … 그리고 전화도 용권이 죽고 바로 도청이 된 거야.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써워 놓고 칭칭 감아 놓고 얘기하고 그랬다고. 전화가 한 7-8개월, 경찰이 철수하고 나서도 계속 … 그때는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엄마들, 재야 선생님들 아니면 오질 못했거든. 전화만 하면 그 전화에 대고 형사들이 “그 집에 전화하지 말라”고, ○○이 엄마네 집에 그랬잖아(김용권의 어머니).

2. 의문사 사건으로부터의 피해

1) 국가와 사회, 이웃에 의한 낙인과 고립

나 혼자 버림받은 느낌, 그것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 우리나라에서 나 혼자 보호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같은 기분, 그 절망감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 혼자 세상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인데 버림받았다는 것(김상원의 동생).

의문사 유족들은 여러 수준에서의 낙인으로 인한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첫째 관계기관에 의한 것으로, 의문사 유족의 가정을 자살의 원인이 되는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만듦으로써 ‘낙인찍는’ 방법에 의한 고통이다. 국가 기관이 잠정적으로 결론 내리는 대부분 의문사의 추정사인은 ‘자살’이다. 가정환경을 비관한 자살이거나 자신의 신변을 비관한 자살이 대체적이라 할 수 있다. 각 관련기관들이 내린 이러한 사인은 유족들에게 또 다른 내용의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는다. 일반적으로 자살은 무척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외롭고 우울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비정상적인 행동, 나약한 행동으로 여겨진다. 특히 기독교 신자들은 생명이란 신이 준 것이며 신만이 생명을 거둘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자살이란 보다 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이은주 외, 1980; 반영진 외, 1989; 신승철 외, 1990).¹⁰⁾ 자살을 택하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신 앞에 놓인 난관을 극복하지 못한 나약하며 행복하지 않았던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행복하지 않은 환경에 놓여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 관련 기관들이 발표하는 ‘비관자살’은 유족에게 자신의 자식이나 형제자매가 나약하며, 자신들의 가정을 비정상적이며 불행한 것으로 평가하게 만든다. 즉 Goffman(1968)이 지적했듯이, 관계기관은 죽음의 원인을 각각의

10) 이것은 자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가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극복할 수 없는 압력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것임을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가정이나 변사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유족의 가정에 ‘비정상적인’ 가정이라는 오점(stigma)을 가져다준다. 이 지점에서 유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¹¹⁾

둘째로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얻게되는 낙인으로 ‘빨갱이’가 되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 있어 ‘빨갱이’가 가지는 의미는 다의적이다. ‘빨갱이’는 단어 자체가 연상시키듯이 친북세력을 의미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빨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이 같은 의미에 한정시키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빨갱이다’라고 지칭하는 존재는 친북세력 뿐만 아니라 반정부운동과 시위를 하는 이들, 노동운동을 하는 이들을 함께 포함하기도 한다. 즉 ‘빨갱이’는 사회를 불안정한 상태로 몰고가는 위협적인 존재로 읽혀 이들을 타자화·주변화시키고 또한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조차 용인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의문사 유족들은 자신들이 이웃과 공동체로부터 낙인찍혀 고립되는 경험을 할 때 ‘빨갱이’ 취급을 받는다고 느끼며, 이로 인한 고통으로 고립감을 겪었음을 토로한다.

마지막으로 ‘빨갱이’로 낙인찍혀 고립된 유족이 이를 벗어나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생기는 고립감이다. 낙인이 한번 찍히게 되면 이를 벗어나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래서 많은 유족들은 ‘빨갱이’라는 낙인을 숨기기 위해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은 자신들의 가정이 정상적임을 보여주기 위해, 낙인으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기 않기 위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의문사 유족들은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고립감으로 고통을 겪게된다. 이는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지만 사회와 이웃이 강요한 침묵이기도하다. ‘감시의 대상’, ‘불이익을 받는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침묵’이라는 ‘안으로 삭임’의 방법은 유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11) ‘오점 만들기’(stigmatizing)가 어떻게 사회적 고통으로 연결되는가는 장수현, “중국 내 북한 난민의 사회적 고통: 한계적 상황과 오점 만들기”, 『한국문화인류학』, 제34집 2호, 2001을 참고.

(1) 낙인찍기: ‘자살’

관계기관의 추정결론 사인이 ‘자살’로 발표되었을 때 유족들은 자신들의 가정이 외부에서 재평가되었음을 알게된다. 죽음의 원인이 자살로 통보 받았을 경우의 재평가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음을 유족들 역시 인식하게 되며, 이로 인한 유족들의 고통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가정들은 고유의 가족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가족사는 다양한 충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가족 구성원의 자살은 여러 충위의 가족사 중에서 하나의 부정적인 내용만을 선택하고 강조하여 한 가정을 특수한 가정으로 왜곡시킴으로써 가족 내부에 있는 문제들을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고 밖으로 표출하고 싶지 않았던 가족사가 사인을 통해 들키어짐으로써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고통 역시 겪게 된다.

<‘음주 후 자살’이라는 사인>

맨 처음에는 뭐라고 났느냐 하면 아버지가 범인이기 때문에 절취한 것을 같이 공모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증인하고 대질하면 아버지가 죄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술을 많이 잡수시고 혼자 고민하다가 떨어지신 것이다 … 그렇게 발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가 아무런 죄인이 아닌데, 아버지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신 분이 아닌데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김창수의 아들).

<‘가정비관 자살’이라는 사인>

현병대에서는 자살동기가 뭐냐. 저는 강제징집이다. 그쪽에서는 가정비관이다. 그 것 때문에 많이 좀 다쳤어요. 가정비관이라는 건 우리 형편이 어렵다 이거죠. 그 당시 저희가 80년대에 한 달에 20만원 정도를 생활비로 썼거든요. 80년대에 20만원이라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정비관으로 몰고 간 거죠. 얘는 자살할 이유가 없다. 처음부터 이 사람들은 자살로 몰아간 거고, 저희는 애가

누가 아쉬워서 죽나. 만약에 가정비관이면 고3때 했지. 저희 동생이 한양대학교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멀쩡하게 들어간 놈이 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냐고요 (한영현의 형).

국정감사 때 제출한 정부측 자료를 보니깐, 한희철이 “녹화사업” 종료 후 가정을 비관하여 자살하였다고 적혀 있더라고. 가정비관에 괄호해 가지고 “어머니의 가출”, 저 사람이 집을 나가서 여관에서 가정부 같은 일을 했었거든, 그 밑에 “동생이 정신 병을 앓는다” 그래 가지곤 비관을 했다 그런 말이야. 근데 희철이는 비관을 전혀 모르는 성격이야. 아버지 말도 안 듣는 놈인데 비관을 해?(한희철의 아버지)

<‘나약함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사인>

그걸 하나 못이기고 자살했다는 것, 국방의 의무마저 못이기고 자살한 것은 부끄러운 일일 수 있는데.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못이긴 죄인취급, 그 부모형제한테 주는 불쾌감 …(허원근의 아버지).

<기독교 신자에게 ‘자살’이라는 사인>

돈이 아니고 명예회복만 시켜주면 원이 없을 거 같애. 기독교 신자는 자살이라는 것은 살인죄거든. 그 누명을 벗고 싶단 말이야. 명예회복 이상 바라지 않았거든(김성수의 어머니).

<‘가정비관 자살’이라는 사인>

나는 하여튼 이유가 없다고 봐요 … 새 어머니의 친정 어머니가 너희 집에 잘못 들어가 가지고 … 재산도 축내고 니 집 형제도 죽였나보다 … 이렇게 … 피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괴로운 거예요. 이건 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 가족이 화목 하지 못한 걸로 자살했다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 (지금 의문사진사규명 위원회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아버지한테 물지각한 것까지 다 내 놓았더라구 … 아버지가 살아있었더라면 … 혐오 내지는 이것을 어떻게 참으셨을까 …(이이동의 누

나).

(2) 낙인찍기: ‘빨갱이’

여기에서의 ‘빨갱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넘어 사회의 안녕을 위협하는 존재 일반의 이미지를 함축하는 대명사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의문사 유족들은 사건 발생 이후 ‘빨갱이’로 낙인찍혀, ‘감시의 대상’ 혹은 ‘위험한 존재’가 되는 과정을 겪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빨갱이’라는 낙인은 자신들이 부정적인 존재로 타자화되어 같은 공동체와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나 단절을 당하는 경험들을 가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은 이웃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직장이동을 강요받았으며, 거주이전의 부자유 등의 피해를 당했다.¹²⁾

① 생계활동의 불이익

의문사 유족들은 가장이나 기대 소득원의 상실로 가계유지에 큰 타격을 받음과 동시에 남겨진 유족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위험한 존재’라는 꼬리표를 얻음으로 해서 생계활동을 함에 있어 많은 피해를 입게된다. 의문사가 발생한 직후에 보여지는 경제적인 피해는 직·간접적인 요구를 통한 강제적인 직장이동이며, 취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영역으로의 진입이 가로막히는 경험이다. 특히 의문사 유족 중에 남성의 경우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 없게 하기도 하고 극심한 경제난에 부딪혀 생존에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가. 해고압력

12) 물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다. 그러나 연구자가 이를 경제적 피해 항목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빨갱이’ 낙인의 특수함 때문이다.

아버지 직장 떨어지고 내 직장 떨어지고 내 일거수 일투족을 안기부 그 사람들이 다 보고 해야거든. … 영업소에서 책임자가 내 일거일동을 보고해야 한대, 그래서 그 만뒀지, 아버님도 하여튼 불편해서 그만뒀어 … 아주 촌에 들어갔잖아, 줄여 가지고, 줄여 가지고 89년도에 조그만 광산에 산골 빈 집에 들어갔다고 …(김성수의 어머니).

삼성그룹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의 서울대학교 호암회관 거기에 내가 있었는데 신문에 나게 되니까 나보고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고 “옮기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언질을 주면서 압력을 주는 거예요(김상원의 동생).

삼성에스원세콤 경비일을 하고 있었는데 … 회사 쪽에서 그만두라는 압력을 받았는데 매형이 가서 못하게 막았지(김준배의 아버지).

나. 취업에서의 불이익

국가 공무원 생활을 한 게 89년이에요. 계속해서 공무원시험을 봤지만 저희는 계속 안되었어요. 88년에 노태우씨가 당선되고, 저희 형제들은 그 이후에 복권이 되었다고 보면 되요. 취직도 안되고. 사회적으로 막말로 매장된거나 마찬가지죠.셋째 같은 경우도 물론 늦게 졸업을 했지만, 졸업하고서 개가 한 2년 정도를 취직이 안되었어요. 가는데마다 신원조회 해와라 뭣 좀 해와라 그러면 걸렸고. 그 당시에는 우리는 ‘빨갱이’였어요. 우리 취급은. (그러면 생활을 하면서 크게 내가 이 사회에서 고립되었다고 느낄 때가 이런 식의) 그렇죠. 공무원 시험을 다 불었어요.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면접이라는 게 신원보증이에요. 우리 동생도 회사가면 다 불었어요. 그런데 면접에서 떨어졌죠. 그 당시에만 해도 공무원 할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못했잖아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면) 제 동생이 처음으로 졸업을 하고 시험을 본 데가 아마 “엘지에드”, 거기를 애가 시험을 봐서 다 불었는데 안 됐어요. 그 당시에 해운회사가 있었어요. 무슨 상선, “국제상선”. 거기를 들어갔어요. 불과 1년 사이에 “엘지

에드”에서 연락이 온 거에요. 우리한테. “와서 한번 근무를 해볼 생각이 없냐.” 이것이 바로 기억에 남아요. 저 같은 경우는 몸도 이렇고 그러니까 떨어뜨려도 그렇구나 하지만 동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그런데 회사 입사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어요(한영현의 형).

② 공동체에서의 고립

이는 각 유족들이 자연스러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의미한다.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생활한다. 이러한 관계는 일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가 파괴되었을 경우 과거의 관계회복이나 새로운 관계의 형성은 상당한 노력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많은 사람들과 같은 시·공간에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어떠한 원조나 도움을 구할 수 없다는 단절감을 느껴야했다. 또한 이주를 할 경우에도 그때마다 동사무소나 구청의 연락을 받아 항상 감시당하는 주민이라는 소외감을 느껴야했다.

<이웃들로부터의 고립>

동네 사람들한테 형사들이 구멍가게나 우리 집 올라오는 길에서 “저 집 아저씨가 나쁜 사람들이니까 신고하면 포상금 많을 거다” … 우리는 그거 모르고 아무렇지 않게 다녔는데 친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 … 그때는 우리 집에 전화가 없어서 이웃집에서 전화를 바꿔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전화기에 다 빨간 글씨로 “안보”라고 척 붙여 놓은 거야. 너무 서운한 거 있죠.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그런 거였을 거야. 이웃집 남편이 그렇게 전화에다 붙였는데 …(장석구의 미망인).

<지인으로부터의 고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동료교수들 중에서도 간첩의 유족에게 무슨 조의금이냐며

조의금의 지급을 거절하던 교수들이 있었다. … 미망인 백경자 여사는 홀로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으며, 그 누구로부터의 경제적 원조를 청하거나 받을 수도 없었다. 최종길 교수를 간첩으로 날조하여 발표하자, 지인들은 일체의 연락을 끊고 유족들을 외면했으며, 백경자 여사 또한 이들에게 폐해를 줄 것을 우려하여 일체의 연락을 삼갈 수밖에 없었다(최종길의 아들)¹³⁾

<거주이전의 부자유>

저희는 이사를 다닐 때마다 거의 그 사람들이 얼루 이사를 가나, 경찰들이 우리가 주소를 옮길 때마다 요주의 인물들이었죠. 저희가 전입신고를 하면 저절로 거기로 통보가 가나봐요. 일반인들은 전입신고를 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전입신고를 하면 꼭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요. “여기 얼마큼 사실 겁니까?”, “아니 내가 우리나라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 살 것인가가 당신이 뭔데 그러요?” 나중에 그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우리가 보고를 해야한다 이거예요. 정보계로. 그 당시에는 회기동으로 이사갈 때가 뚜렷한데 전입신고를 했어요. 근데 회기동에서 그 당시에 회기동이 동대문 관할이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동대문서에서 정보과에서 얘기를 했나봐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전출신고를 하면 카드가 가거든요? 카드가 안 왔니 왔니, 차일피일 미뤄요. 그래서 그 당시에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되요. 저희가 그 당시에 그걸 못해서 벌금을 물었어요. 자기들이 미뤄놓고서 우리한테 벌금을 내래요. 그니깐 그 동네 살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런 것까지 겪었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골치 아픈 가족이 그 동네에 들어오면 파출소부터 어떻 게든지 튼데요. 파출소, 경찰서, 뭐. 그런 것들을 겪었어요. 터부시하는 것을. 한번은 이사를 갔는데 계약까지 다 했는데 그 집에서 위약금을 줬어요. “도저히 못하겠다.” 그게 아마 보문동일 거예요. 아니, “자기는 무조건 안 된다”, 그게 중앙경찰서 경찰집이었어요. 얼마 안 있어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 해지하겠다(한영현의 형).

13) 이하 ‘최종길 아들’의 사례는 직접 작성한 글을 E-mail로 받은 것이다.

<불가피한 잣은 교회 이동>

김동완 목사님한테 강릉에 구속된 명단 빼달라고 했지. 그래서 영동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구성했지(88년 겨울). … 3개 대학에서 집회가 시작되면 내가 먼저 나서지. 성수엄만지 다 알지. 경찰, 검찰에 불들려 가는 건 비일비재하고 서울만 갈려 하면 그 산골로도 오고. … 강릉 그 바닥에서 사람대접을 못 받았지. 그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다 빨갱이라고 했어. 김대중이가 돈대줘서 저런다고. 안기부 형사들, 경찰들이 저 여자 만나지 말라고 … 당신(구속자 어머니들) 아들도 저 여자가 망쳤다고 … 나중에 친해지면 그런 말 해주지. … 노태우 들어서고 애들이 분신하고 데모하고 그랬잖아. 그래서 애들 면회 다니고 그랬는데,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로 내려치는 거야. “길을 다 막는 거는 도로교통법위반이다, 법을 위반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를 다섯 군데 옮겨다녔어. 지금은 팬찮지. 그 목사님도 태백에서 노동운동하던 사람이라 … 누가 글로 가라 해서 글로 갔지 …(김성수의 어머니).

(3) ‘빨갱이’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많은 유족들은 의문사가 처리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감시와 기피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빨갱이’ 낙인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 자신의 존재를 남에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활동과 표현을 스스로 제한하는 노력은 유족들에게 이것 자체가 고통으로 다가온다. 의문사를 당한 이의 이야기를 담는 가족사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침묵’이라는 방법을 선택하고 자신과 가족의 포부와 꿈을 접거나 수정하여 낙인으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낮추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① 침묵을 선택함

<안정적 직장생활과 결혼을 위한 침묵>

한 가지 걸렸던 것은 제가 은행생활을 했기 때문에 누나도 수협에 있었으니까 금융계통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 가지고 가족이 계속 하게되면 무언의 압력을 받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침묵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많이 주변에서 했었어요. … 한국사회에서는 아직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결혼하기가 좋지, 가정에 말이지 큰 변사가 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로 그냥 결혼했는데 작년에 이 사건을 내놓고(위원회에의 진정)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이 그때서야 알았죠(김창수의 아들).

<안정적 일상생활을 위한 침묵>

“아버지는 분명 반공주의자였고, 중앙정보부에서는 우리 집 다락방에서 간첩의 연락망이 적힌 수첩을 압수해 간 적이 없는데, 간첩임을 시인하고 투신자살이라니 …” 어린 자녀들조차도 극도의 분노와 울분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처한다. 그러나 이러한 울분을 그 어디에서도 발설할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정신적 고통이었다. 절친한 친구들에게조차도 부친의 죽음에 대해 털어놓을 수 없다. 미국에서 계속 연구과정에 계시다고 거짓을 말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 자녀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고통은 중앙정보부가 그들의 부친인 최종길 교수를 간첩으로 날조·발표함으로써 자녀들로 하여금 부친의 죽음에 대해 단 한마디의 의문도 입 밖으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강요되었던 점이다(최종길의 아들)

<미래를 위한 침묵>

백련사에서 장례식과 제사에 기관원들의 감시가 있는 등으로 큰 누님은 아버지께 “자식들 장래를 망치지 않으려면 밖에 나가서 입도 뻥긋하지 마세요”라고 함구를 부탁했다. 그 때 형은 공무원이어서 특히 신경이 쓰였다. 아버지는 자유당 독재와 싸우며 민주당 마포 지구당 총무를 맡아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많았다. 그런데 병어리로 지내자니 답답한 가슴이 문제였을까? 창 밖을 보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열흘 정도

치료를 받으시다 운명하셨다. …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동생의 억울한 죽음에 항거는 고사하고 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다(김두황의 형).

<연좌제 공포로 인한 침묵>

대인 기피 그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월북혐의를 다 씌워버리고 그러니까 … 장례하고 유골로 돌려 받고 그래서 … 돌아와서는 월북혐의를 씌워놔서 … 감시를 하고 죄인의 가족이라 … 올지도 못하게 하고 … 그러니까 그런 게 속병이 되지 않았겠어요? … 월남한 장인은 먼 친척만 남한에 있어요. … 월북혐의를 씌웠을 때 장인어른 한테는 뜨끔한 거지. 더 절실하게 위협(약발)이 먹힌 거지. 차라리 없었던 것으로 하고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내가 그런 소식을 전했어요. 그전에도 그런 말 … 농성한다 … 뭐 그런 걸 이야기하다가 (장인에게) 면박도 받고 그랬어요. … 희망의 조건이 빠지니까 처남에 대한 이야기는 금기야. 이야기하면 안 돼. 나만 그런 걸 마음에 두고 있었고. 사회단체 이야기들도 조심스럽게 해도 “그러지 마라. 괜히 건드려서. 본인들이 당하고 말지”하세요. 살아있는 자식들이 힘들까봐(이윤성의 매형).

<기존의 관계유지를 위한 침묵>

시골집 이웃에게 아버지가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주변에서 물어봐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혹시 알고서 물어봐도 “싫어”라 했죠. 시골분위기가 자식이 그런 게 있으면 부모가 얼굴을 못 들었어요. 노조 그런 걸 그 때엔 안 좋게 봤으니까. 이야기도 안하고 그랬죠(이재호의 처남).

② 미래를 수정함

<거주지 및 직장을 옮김>

그때 당시에는 데려다가 다 죽일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떠들면 그 쪽에서 우리한테 무슨 위해를 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뭐 다

공포에 질려 있어 가지고, 동생들은 알다시피 국민학교에 다니는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언제 그냥 어디로 데리고 가버릴지도 모르겠고. 이걸 밝히자니 겁이 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하면 좋겠다, 더 이상 떠들면 직장생활도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주변에서 들려오고 …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그 때 당시에는. 내가 거기(목포)에 내려갔던 것도 우리 가족들이 뭉쳐서 살아야된다 싶은 거였죠(김창수의 아들).¹⁴⁾

<거주지 및 직장의 반복적인 이동>

간첩의 자식이라는 오명을 들을 염려가 있을 시엔 자녀들이 다니던 초등학교를 옮기며, 살던 집도 여러 차례 이사를 해야만 했다. … 미망인은 또한 간첩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은 남편의 신분을 감추고서 직장생활을 해야했기 때문에 직장의 선택이나 직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감수하며 수차례에 걸쳐 직장을 옮기는 과정을 번복해야만 했다. … 아들 광준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대학으로의 진학을 포기하고, 독일로 떠나 버린다. 독일에서의 유학기간은 사실상의 망명기간이었다. 부친의 죽음에 대해 한마디의 말도 꺼낼 수 없었던 국내의 정치상황을 탈피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되었던 것이다(최종길의 아들).

<학업 포기>

학생들이랑 내통한다고 할까봐 학교를 내가 못 가니까. 수료가 안되고 중퇴가 되어버렸지. 비겁할 수도 있는데, 겁먹은 것일 수도 있지(이윤성의 매형)¹⁵⁾

<자녀 진로의 변경>

자식들 앞날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연좌제 문제 때문에 …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나는 원근이 동생을 의대로 보냈다. 법대로 보내면 출세에

14) 직장을 서울에서 가족들이 살고 있는 목포로 옮김.

15) 의문사자 이윤성은 성균관대학교 사학과에 재학 중 강제징집 당하여 사망하였고, 구술자는 같은 학교 대학원을 다닌 바 있다.

지장이 있을까봐서(허원근의 아버지).

2) 경제적 피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경제적 피해는 가족의 일원이 사망하여 나타나는 손실이다. 즉 가계부양자나 기대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손실, 가족의 일원이 사망함으로써 생긴 심적 고통으로 인해 생업을 포기하게 된 경우다.

(1) 주요 가계부양자, 기대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한 피해

가계부양자를 상실한 경우 부인이나 장남이 자녀와 형제자매의 양육을 위해 대신 그 짐을 짊어져야 했고, 기대 소득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후자의 경우, 가족 모두가 한 명에게 모든 기대와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해줌으로 해서 그 기대 소득원이 의문사 했을 때에는 가족 전체가 막막해하면서 낮은 경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호 유족의 경우는 이재호의 사망으로 아버지가 자살하면서 더욱더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맞이했다.

<가계부양자의 사망>

당시 유족 전원은 생계를 전적으로 최종길 교수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최 교수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이들 유족의 생계기반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미망인 백경자 여사는 홀로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했으며, 그 누구로부터의 경제적 원조를 청하거나 받을 수도 없었다(최종길의 아들)

<기대소득자의 사망>

집안에서 외아들이거든 외아들이니깐 집안에서 기대를 많이 걸었어요. 서울대학 교 들어갈 때부턴 아주 그냥 너만 졸업하면 그러니깐. 딸린 4남매. 그러니깐 전부 5

남맨데 아들이 하나라구. 내가 군에서 제대해 가지고 집안이 매우 어려웠을 때였어요. 애들 고등학교만 졸업시키는데도 내가 땀을 많이 흘렸지. … 아들이 하나였는데 그게 그리 되었으니 내가 벌어 생계를 유지해야하니깐 …(한희철의 아버지).

아버지는 우종원이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행상을 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우종원이 특히 공부를 잘해 모든 가족들이 우종원의 뒷바라지를 하게된다. 다른 자녀들은 공부를 시키지 못하고 우종원만 진학시키게 된다. 집의 모든 식구들은 우종원을 진학시키기 위해 경제적 도움을 자청하였다. 어머니는 항상을, 셋째 누나는 중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여 종원을 공부시켰으며, 형 역시 월급을 받게되면 자신의 가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종원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다(우종원 어머니의 구술 정리).

그래도 경식이 있을 때는 돈벌면 갖다주고 엄마한테 너무 잘하고 그래서 나는 든든한 아들 있다 했는데 …(정경식의 어머니).

동학이가 장남인데다가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나도 한다고 했는데 동학이 학교 보내면 나까지 학교 못간다고 … 부모님한테 크게 차지한 자식이었는데 … 그 해 가을에 장난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시킨다는 말까지 하셨어요. 엄마는 아직도 주방 한 곁에 사진 걸어놓고 … 생각나면 울고 … 식구들 모이면 생각나면 울고 … 얘기 안 해도 생각나면 울고 …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박동학의 누나).

<사건 충격으로 인한 생계부양자의 자살>

그러다가 아버님이 자살하셨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가장을 들을 잃었어요.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는 막둥이랑 아버지랑 어머니가 살았거든요. 재호가 학비도 보태고 그랬다구요. 개가 장손이예요. 큰집이고. 바로 밑의 동생은 군에 있었고, 여동생은 서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농사지으시고. … (사고가 난 이후) 생계는 어머니가 농사지으시면서 남동생이 제대해서 보태고 … 저희는 가장들만 들

을 잊으니까 집안이 말이 아니죠(이재호의 처남).

<사건 충격으로 인한 생계부양자의 와병>

(원래 아버지가 “와사풍”이 있다가 완치된 상태였으나) 용권이 죽고 1년 후에, 87년 11월 12월쯤인가 봐. 밥도 못 잡숫고 술로 살더니 쓰러져버렸어. 그리고 나서 일을 못했지. 병원에 입원하고, 하나도 못했지. 그리고 내가 파출부하고. 애들은 아르바이트하고. 가정이 어려우니까 … 파출부도 하고 장사도 해보고. 미역, 다시마, 멸치 장사 …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봤어. 근데 그게 제 맘대로 되나. 아는 사람들이 조금씩 빌려줘서 하고. 사고났을 당시 동생들은 아르바이트 다 하고, 응자받고,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아르바이트했어(김용권의 어머니).

(2) 생업의 포기

가족 구성원이 의문사하자 유족들은 그 충격과 슬픔으로 생업을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는 자신들의 미래를 전혀 설계하지 않고 생존을 위한, 즉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경제생활만을 함을 의미한다.

<사업 포기>

장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5녀 끝에 유일한 막내 아들이었고, 장인 입장에서는 월남한 사람이라 주위 사람들한테 신세도 안 지려고 해서 … 정작 당신에게 유일한 희망은 아들이었는데,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갈 수 있게끔 해놓았는데 … 제대 8일 전에 죽어서 돌아왔으니까 … 유리그릇으로 말하자면 잘 된 그릇이 그냥 깨져버리고 만 셈인데 … 장인은 사업 모두 기피하게 되고 … 객관적으로 장인 어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랬으니까 …(이윤성의 매형).

<자진 퇴사>

직장은 그만뒀지. 그 때 … 승필이 그 일 나서는 아무 것도 못하고 … 아무 것도

안하고 혼자 살았지. 생계는 혼자라 애들이 김치 담가오고, 과일 사오고. 애들 다 가져와서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유가협도 나오고 그러면서 정신을 차렸지(문승필의 어머니).

<가계 파산>

우리 아들 죽고 우리 아들 살던 집에서는 못 살겠어서 이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 농협에다 잡혀 가지고 항상 그 빚을 못 갚으면 쫓겨날랑 갑다 그러고 있지요. ...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게 살았는디 ... 어렵게 산디다가 계속 영안실에서 사니까 그 때 당시 전기세도 못 내고. 그 때 우리 입장이야 말할 것도 없지. 완전히 거지 생활을 했었어요. 우리 아들 살았을 때부터 힘들게 살았는디(이덕인의 어머니).

(3) 정당한 대가 받지 못함

최종길 유족의 경우 최종길 교수가 재직하던 대학으로부터 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으며, 집필을 끝마친 책도 출판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처럼 '자살'로 처리됨으로써 퇴직금이나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존재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요망되는 부분이다.

유족은 또한 최종길 교수가 10여 년 동안 재직하던 국립 서울대학교로부터 퇴직금 및 잔여 급여의 지급 등 일체의 정당한 금전지급을 받지 못하였다. ... 최종길 교수는 법학전문출판사로서 저명한 "법문사"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이미 『민법총칙』 교과서의 집필을 끝마친 상태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내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민법학계에서의 최종길 교수에 대한 높은 학문적 평가와 명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책이 출판되었다라면 각종 시험의 필수과목인 민법총칙 과목의 대표적 지침서로서 자리를 잡아 저자 수익 또한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을 것이 자명하다(최종길의 아들).

3) 육체적·정신적 피해

우리가 질병으로 칭하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 인류학자들에 따르면 질병은 한 인간의 내면세계 및 삶 전체와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이나 사회 전체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병태생리학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¹⁶⁾ 그리고 개인이 정신적인 아픔과 고통을 느낄 때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그것은 신체적 증상으로도 나타난다(변주나 1996). 이는 문화결속 증후군(culture-bound syndrome)으로 분류되는 '화병'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인에게만 특유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된 '화병'은 감정 표출의 억제를 미덕으로 삼는 문화적인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된다. 변주나 (1995, 1996)에 의하면 감정의 억제가 기준치 이상을 상회하는 경우 그것이 신체 증후군으로 나타난다. 즉 '화병'은 풀지 못하고 응어리져 있는 부당하게 당한 처사 등에서 유래되는 '한'(恨)에 의한 '화'(禍)가 그 원인으로, '화'라는 감정의 표현이 허락되지 못하는 한민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가치와 규범에 결속되어 나타나는 한국문화결속증후군이라 귀결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의문사 유족들에게서도 '화병'이 발견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족들은 자신들의 고통을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침묵 당함으로써 응어리져 있는 화를 풀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의문사 유족의 상황은 '화병'을 만들어내기 충분하며 유족들이 호소하는 신체적 증상 역시 '화병'의 선상에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고통의 원인이 된 생활변화 사건과 질병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생활변화 사건은 개인의 적응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심신에 충격을 준 심각한 생활변화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후 3년 이내에 발병할 가능성이 80% 이상에 달한다. 의문사 사건 역시 하나의 '재난'으로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관련 신체증상으로는 위장계 장애, 심맥

16) 전우택 외, "인간의 고통과 의료의 본질", 『의료의 문화사회학』, 몸과 마음, 2002를 참고.

관계 장애, 호흡기 장애, 신경계 장애, 내분비 장애 및 면역계 장애 등이 보고되고 있다(변주나, 2000: 119).

그리고 의문사 유족들에게 공통적이고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신체적 증상과 특이한 행동양식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잊기 위해 술과 담배에 의존한다든지¹⁷⁾ 일상적 수면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린다든지 하는 것이 그것들이다. 이 증상 역시 의문사 유족들이 자신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지 못하여 나타난 신체적 증상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1) 육체적 피해

유족들은 심장병, 위장병, 뇌출혈, 우울증, 정신병, 혈압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는 가족의 죽음 발생 자체의 충격에 덧붙여져 사건발생 이후부터 계속된 감시, 부검현장 목격, 사건처리 과정의 혼란함 등의 충격이 더해져서 심각한 육체적 고통으로 이어진 것이다. 신경안정제와 수면제를 포함하여 수종의 약들을 복용하는 경우가 흔했다.

<심장병, 정신병>

누님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서 심장병이 굉장히 심해요. …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 때 당시 남동생이 중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정신병이 있어요. 가정도 못 이루고.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 아닙니까. 근데 그 때 당시로는 “나가서 다 챌려 죽이겠다”, 막 이럴 때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발산을 못하고 다 가슴에 가지고 있었던가 봐요. 지금도 상태가 안 좋으면 아버지 원수를 갚겠다고 뛰어나와 버리고 … 지금 저희 누님 같은 경우에도 그 때 그런 전화로 그러한 상황을 당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막 심장이 뛰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몸을 가누지를 못해요. 그

17) 술과 담배를 통해 스트레스와 고통을 해소하는 방법은 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서도 역시 발견된다(심영희, 2000).

때부터 그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조금만 뭐하면 막 놀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만 … 굉장히 놀래서 그런 거죠. 여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때 나이가 24살이었는데(김창수의 아들).

<정신과 치료>

그러니까 장모의 경우 그걸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랬어요. 아들도 다시 낳아야 한다고 그러시고 주책없는 짓도 하시고. 다시 아이를 낳으면 되지 않느냐 … 그렇게도 생각하셨을 것이고 … 그래서 장인한테 공격적이 되고 … 그래서 장인이 정신병원에 넣으니까 장모님은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고 난리 나고 … 한 달 정도 계시다가 퇴원하고 다시 한 번 그러셔서 또 입원하고 … 그 뒤로 장모님은 환자야 … 장인 어른과 갈등이 있고 … 그러면 다투는 것은 다 그것 때문이야. 그것으로 인해 장인 어른이 당한 고통은 또 다른 거야. 작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합치게 된 것도 장모님이 하두 괴롭히니까 … 장인이 돌아가시고 그랬어요. 장인의 병은 일종의 백혈병이었다는데, 피가 썩는 거였고 … 보통사람 같으면 아프다 그러셨을 텐데 본인이 꾹꾹 참고 …(이윤성의 매형).

<수전증, 뇌출혈, 신경성 위염>

어머니는 사고소식의 전화연락을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가끔 손을 떠는 증상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는 뇌출혈로 1년 3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형은 신경성 위염을 앓고 있다(정연관 형의 구술 정리).

<정신과 치료, 혈압약·안정제 복용, 자궁적출술·유방근종 등>

그 때는 무슨 경황도 없었고 그 때는 내가 살아있는지 어쩐지도 몰랐으니까. 정신이 없고 경황이 없었거든. 5일만에 장례하고 내가 좀 머리가 돌았어. 애들이, 승필이 선배가 나랑 서너 달 살았어. 애들이 밥도 해주고 그랬지. 거의 미쳤지. 밤에는 옷 벗고 옥상에 올라가고. … 지금까지 약으로 산 거지. 안정제 먹고. 정신과치료도 받았